

「2014년도 중소기업 R&D기획역량 제고」 시행계획 공고(3차)

중소기업의 R&D기획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14년도 중소기업 R&D기획지원」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14년 9월 22일
중 소 기 업 청 장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분석, 시장성 조사, 성공가능성 평가,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등의 R&D기획을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
- 지원규모 : 40억원 (150개 과제 이내)
 - 3차 지원규모 : 1.5억원 (7개 과제 내외)
 - * R&D기획지원 1,2차 공고는 기 종료

2. 지원 분야

-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
-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'미래 성장 유망 20대 전략분야 중점지원(혁신과제)

◇ 20대 전략분야 : 에너지변환저장, 에코조명건축, 친환경생산, 에너지, 제조기반, 무기소재공정, 화학소재공정, 수송기계, 산업용 기계, ICT융합, 로봇융용, 나노융합, 바이오, 의료기기, 차세대 디스플레이, 반도체, 컴퓨팅 SW, 디지털콘텐츠, DTV, 안전보안

☞ 20대 전략분야별 69개 세부전략분야 <붙임1 참조>

3. 신청 자격

□ 공통사항

-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□ 과제별 신청자격(신청접수 마감일 기준)

- ① 혁신과제 : 이노비즈(Inno-Biz)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*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- *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

- ② 창업과제 : 창업 후 7년 이하이고,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

- *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: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, 사업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

□ 신청자격 등의 검토·확인

- (서면·대면평가)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(전문기관)

- *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

<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>

구 분	확인 근거
설립 년월일(창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개인사업자 : 사업자 등록증 ▪ 법인사업자 : 법인 등기부 등본 *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,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
상시 근로자 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* 상시근로자 : 2013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(2013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)/12)
부채비율, 자본잠식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 *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,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
신청제한 및 지원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신용정보 등 확인 ▪ 국가R&D사업관리서비스(mdgate.ntis.go.kr) 조회 등

- 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

※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

4. 지원 조건

① **혁신과제** : 총 사업비의 65%까지 (최대 2,210만원 한도) 기획기관에 지원하며,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% 부담

* 중소기업부담금 :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%, 현금부담 15%

② **창업과제** : 총 사업비의 75%까지 (최대 2,550만원 한도) 기획기관에 지원하며,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% 부담

* 중소기업부담금 :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%, 현금부담 5%

5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접수기간 : '14. 10. 6(월) ~ 10. 23(목) 18시 까지

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~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

* 전화응대는 10월 23일(월) 18시까지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(인터넷)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·접수

* <http://www.smtech.go.kr>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온라인과제 관리 → 과제신청 → 지원사업 →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* 신청서류 : www.smtech.go.kr → 정보마당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 → 2014년 R&D기획지원사업(1차) 시행계획 공고

○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회원가입	온라인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 I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Part II	접수 확인 및 완료 <접수증 출력>
<p>① 1단계 : 회원가입 -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</p> <p>② 2단계 :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-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,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을 통해 직접 입력</p> <p>③ 3단계 :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-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·업로드 하는 것으로,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에 업로드 -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</p> <p>④ 4단계 : 접수 확인 및 완료 -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(신청·접수 완료) (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)</p>			

○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

연번	서식명	비고
①	신청 사업계획서(part-1, part-2)	필수
②	개인정보 및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	"
③	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	"

6.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

□ 서면평가(10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,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

□ 대면평가(11월)

-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기술성, 경제성, 사업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한 후,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

□ 지원과제 선정(11월)

- 대면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'심의조정위원회'에서 지원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

※ 종합평점 = 대면평가 점수 - 감점
 ·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R&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

□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(12월)

-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
 ※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 R&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>



* 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7. 선정된 과제에 대한 R&D기획지원

-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, 제품화 및 시장전망, 향후 사업 전략,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·사업성에 대한 R&D기획을 지원
- 선정기업의 임직원,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합동으로 R&D기획을 수행하고,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

8. 우수과제의 R&D연계지원

□ 연계지원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'15년도 중소기업청 R&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 지원

※ 단,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, '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' 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(참여횟수 제한)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

- 혁신 과제 : 단독기술개발은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(최대 2년/5억원),
공동기술개발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연계(최대 2년/6억원)
- 창업과제 :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(최대 1년/2억원)

9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□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

-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□ 기 개발/기 지원 여부

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
-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
- 신청기업이 기 생산·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
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-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, 성과 실적 입력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
*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

□ 참여제한 여부

- 주관기관, 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□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- 주관기관,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*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
㉠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

㉡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*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

·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㉢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
* 단,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

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* 단,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10. 참여횟수 제한(R&D기획 연계지원시)

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“연계지원 불가”

- '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, 공동개발기관, 참여기업 (산학연사업에 해당)의 자격으로 참여하여
 - 개별 중소기업당 ‘저변확대’ 사업은 총 3회까지, ‘선택집중’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
- '05년 이후 ‘선택집중’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‘저변확대’ 사업에 참여 불가



* ‘건강관리연계 창업과제’는 ‘저변확대 사업’임

○ 그 외 적용기준

- 제품·공정개선 사업은 ‘저변확대’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
- '05년부터 ‘저변확대’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‘선택집중’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‘선택집중’ 사업을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
- ‘산학연 협력기술개발’사업 참여기업은 ‘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

11. 문의처

기 관 명		전 화
전문기관	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	국번없이 1357(R&D콜센터) → 2
기획기관	기술보증기금	02-2155-3765
	더비엔아이	02-6734-2501
	특허법인 프렌즈	02-563-4593~4
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02-3299-6012

※ 기획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

*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tech.go.kr>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